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상욱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1년 6월 30일
- 회부일자 : 2021년 7월 2일

3. 제안사유

- 최근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사회문제로 이슈화되고 있으며, 제도적 보완을 위해 「아동복지법」 등 아동학대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,
- 도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가. 제명을 개정함.

- (현행)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
- (개정)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

나. ‘피해아동’에 대한 용어 정의를 추가함. (안 제2조)

다.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4조)

라. 연차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계획 수립을 규정함.
(안 제4조의2)

마. 아동학대 예방 관련 행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4조의3)

바.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4조의4)

사.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업무를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라 개정함. (안 제6조)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김주희)

○ 제출배경

- 최근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그 가해자 대부분이 부모, 아동시설종사자 등 대리양육자 또는 친인척 등 아동과 가장 가까운 보호자로 밝혀지면서 아동학대가 더이상 개인 가정에서 해결할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임.
- 또한, 「아동복지법」,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등의 일부 개정으로 그 내용을 일부 반영하고 충청도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논의되었음.

○ 주요내용 검토

- 개정안은 현행 조례 제명을 “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”에서 “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”로 변경하려는 것으로, 충청도의 아동학대 관련 정책에 있어 예방 및 방지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대응 및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역시 중요한 한 축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.

현행	개정안
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	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

- 조례의 고유한 이름인 제명이 조례의 규율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, 피해아동 보호에 대한 충청도의 책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동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.
- 또한 제1조(목적)은 현행 “충청북도 아동의 학대예방과 아동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”에서 “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”으로 개정하여 피해아동 보호에 대한 충청북도의 책무를 강화하고자 하였음.

- 이외 아동복지법 제2조8호에 의거 “피해아동”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는 규정을 인용 ‘피해아동’에 대한 용어 정의를 추가(안 제2조)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4조), 연차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계획 수립 규정(안 제4조의2), 아동학대 예방 관련 행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4조의3)을 신설하며
-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4조의4),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업무를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라 개정(안 제6조)하여, 충북도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내용과 근거를 명확히 하였음.

○ 종합 검토 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「아동복지법」,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에 근거하여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일부 반영 하고 충북도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,
- 동 개정안은 아동학대 예방·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,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, 그 타당성과 필요성이 매우 인정된다 할 것이며 입법적 차원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